#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0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박대수 · 임이자 · 정경희

윤영석·홍준표·이만희

이태규・구자근・김선교

권명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 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음.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7년 법제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의 1천 5백여 건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부 소관 일부 법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무형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제 조항이 산재해 있음.

이에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할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신속한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신설 등).

#### 법률 제 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
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	입신고 등) ①
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	
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	
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	
로서 환경부장관이 <u>제6항</u> 에 따	<u>제7항</u>
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u> 의 규정	<u>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u>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 ⑤ (생략)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 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u>제9</u> <u>조제6항</u>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 (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 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 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 1. • 2. (생략)

② ~ ⑥ (생 략)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9조제4항</u>의 규정을 위반하 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 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 3. (생략)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경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

<u>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u>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5항
2. <u>~10.22~10.6</u>
o /처체되 기·ㅇ)
3. (현행과 같음)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u>제4항</u>

의	어느	하나에	해딩	하는	측	정
フ) ス	기로서	환경부	부장관	반이	제4	항
에	따른	기준에	적힙	하다	卫	인
정칭	하여	공고하	느 .	측정기	[フ]	는
제의	리한다	•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1. <u>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
  - 2. ~ 8. (생략)
  - ② (생략)

제33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 또는 <u>제3항</u>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수료) ①
<u>.</u>
· 1. 제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
항
<u></u>
2. ~ 8.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
1 <u>제4항</u>
2
<u>제</u> 9조제1항·제2항 또

<u>까지</u>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u>는 제4항</u>-----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를 한 자 ------

- 3. 4. (생략)
- ③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
  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 7. (생략)

③ (생 략)

<u>L / 114 6</u>
3. • 4. (현행과 같음)
5. 4. (한경의 崔립)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u>제9조제5항</u>
2의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